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609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판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구합1613 판결
환송전판결	[redacted]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5660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960,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39,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면 6행부터 4면 12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그런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 명의로 양수하였다는 2008. 3. 10. 무렵부터 자신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를 마친 2012. 7. 23.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D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 명의로는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당시 이미 의결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에 관해서는 실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문제의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참조) 문제의 주식 양수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그 주식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후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는지 등의 후발적 사정에 따라 소급하여 문제의 주식 거래 당시에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1]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이유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2. 7. 23. 무렵이 아니라 2008. 3. 10. 무렵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도 그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기(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한 시점을 그 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이러한 견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것들인 데다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